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설치〉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3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기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3.

다. 회 부 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김기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 「출입국관리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재외공관에 납입하는 수수료는 제외)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수료 ◦ 「국적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 기금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용 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난민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 통합 정책의 집행 ◦ 제9조에 따른 정책연구·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업무수행 지원 ◦ 제2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 제28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통합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그 밖에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관 리	◦ 법무부장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국인처우법개정안”이라 함)은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체류 목적 또한 단순 노무에서 유학, 전문 인력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차별·

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재한외국인²⁾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인권 보호 등 정책적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사회통합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여러 부처의 일반회계에 분산되어 있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증가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통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낮으며, 기금의 주요 재원인 수수료 등이 독립적인 기금의 주된 재원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2)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므로, 과다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³⁾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의 주요 재원 중 ‘「출입국관리법」 제87조에 따른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국적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외국인의 입국·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로, 이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행정 수요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적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다시 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 정책에 투입하는 경우 기금의 재원-용도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해당 수수료에는 관광객 및 초단기 체류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용도로 활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 및 신규 사업의 추진 수요가 있으므로, 기금의 신설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이미 법무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일반회계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관련 타부처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내용	2026년 예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문화 정착	2,400
	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 관리	2,20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외국인근로자기숙사	4,800
해양수산부	외국인근로자복지화관	1,200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 법무부 사회통합정책 관련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2025년 예산
	합 계	35,193
법무부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7,639
	국적업무 지원	1,079
	외국인 정착지원	7,793
	난민 지원	3,745
	재정착난민 지원	338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4,684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13,909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등	31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3,594
	▪ 이민정책개발지원	190
	국제협력 및 정책개발	99
	해외사례 연구	91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3,455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등	3,455

자료: 기획예산처

마지막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에 따른 수수료를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수수료 수입은 2024년 기준 1,278억원임. 이는 기금 신설 시 지출 예상액인 1,030억원⁴⁾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기존] 법무부 사회통합 관련 예산 351억원 + 기존 지자체 예산 169억원과 [신규] 사회통합 사업비 316억원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비 194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다만, 기획예산처는 법무부의 2024년 수수료 세입결산금액은 431억에 불과하고, 수수료 수입은 변동성이 높아 기금 수입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관련 연도별 수수료 수입액]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6,266	20,467	44,491	56,023	43,120

* 비자발급(15달러), 등록증발급(3.5만원), 체류연장허가(6만원), 체류자격변경 등 수수료(10만원)
 등 각종 출입국본부를 비롯한 법무부 행정업무 수수료 총액
 자료: 기획예산처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외국인처우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문의처

02)6788-5150

참고1

기금의 규모(수입 및 지출)

□ **기금 수입(각종 수수료) ⇒ 1,278억**(‘24년 기준)

내 용	세부금액	합 계
체류업무 수수료	746억	1,278억
전자민원 등 수수료	228억	
외국인 등록증 등 발급	200억	
국적업무 수수료	64억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수수료*	40억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수수료) 40억 예상(‘25. 1.부터 교육 단계당 10만원 부과 시행)

□ **기금 지출 ⇒ 1,030억원 (351억원 + 169억원 + 316억원 + 194억원) + α***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타부처 소관 법률에 따른 사회통합정책 사업에도 지출 가능

○ **[기존] 사회통합 예산 : 520억원**(‘25년 기준)

- (법무부)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등 사회통합정책 관련 사업으로 **351억 지출**

<‘25년 법무부 사회통합정책 관련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합 계	‘25년 예산
		35,193
법무부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7,639
	국적업무 지원	1,079
	외국인 정착지원	7,793
	난민 지원	3,745
	재정착난민 지원	338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4,684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13,909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등	315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3,594
	■ 이민정책개발지원	190
	국제협력 및 정책개발	99
	해외사례 연구	91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3,455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등	3,455

- (지자체) 지역별 외국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해 **169억 지출**

<'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과제> (단위: 백만원)

지역	사업명	'25년 지방비
	합계	16,905
경기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등 10개	5,623
서울	서울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등 3개	5,232
인천	IFEZ 글로벌센터 운영 등 3개	1,777
광주	광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220
대전	외국인주민 상담센터 운영	45
울산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233
제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지원	579
충남	충남외국인주민 통합지원콜센터 운영 등 3개	852
충북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등 2개	641
전남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등 3개	509
전북	전북자치도 1시군1외국인지원센터 운영	560
경남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등 2개	634

○ [신규] 사회통합 사업비 증액 소요 : 316억

-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의무화를 위해 **265억 증액** 필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안))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 부여 ⇒ **222억 증액 필요**

※ 10.7만명(3년 초과 4년 이하 체류 외국인) × 0.77(전체 대비 20~59세 비중) × 2 (2단계까지 교육) × 0.9 (기 수강 등으로 참여율 90% 가정) × 150천원(24년 교육 단가)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안))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거소신고를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를 부여 ⇒ **43억 증액 필요**

※ 27만명(24년 신규 등록거소신고 수) × 23천원(24년 교육 단가) - 19억(25년 기 편성 예산)

- (사회통합교육 대상 확대) 초·중·고교 방과후 수업 등을 활용해 **이주배경 학생**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51억 증액** 필요

※ 19만명(24년 이주배경학생 수) × 0.6(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60% 참여 가정) × 150천원(24년 교육 단가) × 3 (3단계까지 교육)

○ **[신규]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비 증액 소요 : 194억 원**

- (중등교육 보조) 동포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지역 대학 재학생과 연계한 중·고등학교 수업 보조 지원* 및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전통 예술·문화 교육 등 **171억 원 증액** 필요

* 중고등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동포 청소년을 위해 과목별 아해를 돕는 보조 강사 지원

※ 68개 기관* × 7명(국영수과사 각 1명 여체능 2명) × 5시간 × 월 12회(주 3회) × 12개월 × 5만원** = 17,137백만원

*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및 전국 15개 동포 집중거주지역 당 3개 동포지원단체 지정

** 교육청 외부강사비(고등학교) 시간 당 지급 기준 준용 5만원* = 1,656백만원

- (동포 사회통합 지원) 동포 행려병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대상 쉼터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23억 원 증액**

※ 23개 센터 × 3명(24시간 교대) × 12개월 × 2,732천원* = 2,622백만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와 동일